

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

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전문예술단체의 안정적 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연예술계 창작 환경 개선, 지역 예술인 기회 확대 등 공연예술 생태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자 「2025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지역을 대표할 예술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 사업 소개

□ 사업 개요 ('24년 시범운영 → '25년 본 사업 추진)

- (사업명)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
- (사업기간) 2025년 1~11월 (공연 기간: ~11월 둘째주, '25.11.16. 종료)
- (내용) 지역 소재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 지원
- (대상/장르) 서울 외 지역 / 순수예술 4개 장르(무용, 연극, 음악, 전통)
- (주최/주관) 문화체육관광부
- (예산) 총 90억 원 (지자체 경상보조, 지방비 매칭비율 30~60%)
 - 단체당 지원금 최소 2억원 ~ 최대 20억원

□ 추진체계 및 일정

- ('24.9.11.) 문체부 - 2025년 공모 공고
- ('24.9~11월) 지자체 - 각 지역을 대표할 후보 선정
- ('24.9.30~11.29.) 지자체→문체부 - 공모 신청 ※ 신청 주체: 지자체
- (~'24.12월말) 문체부 - 지역대표예술단체 최종 선정
- ('25.1~11월) 문체부·지자체 - 단체 지원 및 평가 * '25.12월 정산

('24.9.11.) 공모	('24.9~11월) 후보 선정	('24.9.30~11.29.) 신청 마감	('24.12월말) 최종 선정	('25.1~11월) 단체 지원 및 평가
공모 공고	지역단체 후보 선정 (단체당 지방비 최소 0.6억, 최대 12억)	공모 신청	2차 심사 및 최종 선정 (단체당 국비 최소 0.8억, 최대 14억)	단체 지원 및 평가 (단체당 지원금 최소 2억, 최대 20억)
문체부	지자체	지자체→문체부	문체부	문체부·지자체

2 공모 요강

□ 지원 대상 및 장르

- (지원대상) 서울 외 지역 소재 예술단체
 - ▲ 기존 단체, ▲ 신설 단체, ▲ 서울 단체의 지역 유치 등 모두 가능
- (지원장르) 순수예술 4개 장르(무용, 연극, 음악, 전통)

장르	세부 장르 예시	비고
무용	한국·전통무용, 발레, 현대무용, 다원예술 등	스포츠댄스, 무예 제외
연극	연극, 마임, 인형극, 가무악극 등	대중가요, 영화음악 제외
음악	실내악, 교향악, 오페라, 오페라 합창 등	시낭송회, 팝소악스트라 제외
전통	정악, 민속, 관현악, 풍물, 연희 등	-

※ 지원 제외 단체

- 기존 공립예술단체(단, 공립예술단체를 신설하는 경우, '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신설된 경우는 지원 가능)
- 초·중·고·대학생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(아마추어 단체 포함)
- 종교 관련 기관 및 소속단체
- 대중음악 등 순수예술 외 공연 위주의 단체
- 개별 단체가 아닌 협회·연합회 또는 협회·연합회의 지역 지부
-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
- 지역축제 사무국 또는 축제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

□ 지원 내용 및 규모

- (지원내용) 예술단체의 사업비(공연 창작 등) 지원
 - * 별도로 평론, 경영(법률·회계·노무·마케팅 교육), 홍보, 네트워킹 지원
 - *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우수단체는 차년도 후속 지원 예정(서울·해외 공연 개최 등)
- (지원규모) 단체당 최소 2억원, 최대 20억원(국비+지방비 총액 기준)
 - 지자체별 매칭비율 상이함(지방비 매칭비율 30~60%)

재정자립도*	10% 미만	10% 이상 ~20% 미만	20% 이상 ~40% 미만	40% 이상
지방비 매칭비율	30%	40%	50%	60%

* "2022년 결산 재정자립도 개편 후"를 기준으로 함
(재정자립도 관련 지방재정 365 참고자료 참조)

- 지자체별 지원규모 제한은 없음

□ 지원 조건

- ① 공연 1개 이상 창·제작 (신작 또는 기존 작품의 레퍼토리화)
- ② 해당 지자체 내에서의 공연 3회 이상 (신설 단체는 2회 이상)
 - * 해당 지자체는 광역 기준으로 인정(인접 지자체에서의 공연도 인정)
 - * 유료 공연 권장, 공연통합전산망(KOPIS) 활용 권장
- ③ 시즌 단위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위 운영 (지역예술인 참여 권장)

□ 우대 조건 (각 5점)

- ① 서울 단체의 지역 유치 (단체의 주소지 이전, 지역 채류 등 권장)
- ② 지역이 가진 인물, 이야기, 명물 등을 소재로 창·제작하는 경우
- ③ 지자체가 단체에 별도로 공연장, 공연연습장 등 현물 지원할 경우
- ④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선정단체 (총 42개)
- 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연단체

*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상 인구감소지역 가점 5점 부여(참고 ▶ 링크)

□ 지원 유의사항

○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, 지원 불가

* 선정 이후에도 지원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
- 각 지자체의 “2025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”,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“2025년 공연예술증장기창작지원”, “지역예술도약지원” 등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
- 기획재정부「보조금법」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
- 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다만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)
-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
-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
-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, 부정수급·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
-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

○ 기타 준수사항

- (교부신청·집행·정산)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신청,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
- (서면 계약 체결)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
 - * 단,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,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「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」의 출연계약서, 창작계약서, 기술지원근로계약서, 기술지원용역계약서, 대관계약서 활용 권장
- (참여예술가 사례비 지급) 공연 참여예술가·스태프의 적정 사례비 지급
 - * 예산 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지급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
- (공연정보 아카이빙 정보 제출) 공연 영상·사진, 디자인·홍보물, 참여인력 정보 제출
- (모니터링·평가 참여) 사업 선정 시,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·협조 필수

□ 예산 편성 세부기준

○ 총 사업비 내 30~60% 지방비 매칭 책정 필수

< 예산편성 항목 예시 > (보조사업비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				
목	세목	국고보조금	지방비	비고
인건비 (110)	기타직보수(02)	- 기간제 인건비		
운영비 (210)	일반수용비(01)	- 연출, 출연진 등 전문인력 사례비 - 홍보·마케팅비 - 물품운송비 - 회계검증수수료(필수)		* 홍보·마케팅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, 워크숍 운영 가능 * 회계검증 필수
	공공요금 및 제세(02)	- 상해보험료, 화재보험료, 행사보험료 등		
	임차료(07)	- 공연장 및 연습공간 임차료 - 의상 및 소품 등 물품 대여료		
	복리후생비(12)	- 예술인 고용 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(필수)		* 작품 활동기간 산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납부
여비 (220)	일반용역비(14)	- 무대 제작 용역비 - 의상 및 공연소품 제작 용역비 - 조명 및 음향 용역비 - 홍보대행 용역비 - 공연 아카이빙 용역비(필수)		
	국내여비(01)	-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		*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 타 지역 체류기간에 한해 책정

※ (국비 편성 불가 항목) 상근인력 인건비,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(소모품비, 사무 기기 임차료 등), 자산취득비(악기 구입비 등), 회의진행 경비(과과, 식대 등)

· (단체 대표 사례비) 주요 역할(연출, 안무, 예술감독 등)에 참여할 경우 사례비 책정할 수 있으나, 본 사업 내 다른 역할 수행을 통한 중복 집행 불가능

- (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직·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증 필수

*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예시

총 사업비(국고보조금+지방비)	회계검증수수료(원)
1억원이상 2억원미만	935,000
2억원이상 3억원미만	985,000
3억원이상 4억원미만	1,170,000
4억원이상 5억원미만	1,370,000
5억원이상 6억원미만	1,600,000
6억원이상 7억원미만	1,800,000
7억원이상 8억원미만	2,000,000
8억원이상 9억원미만	2,130,000
9억원이상	2,300,000

- (공연 아카이빙 조건) 4K 해상도 (3,840×2,160 또는 4,096×2,160) 준수.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 편집본 원본 제출

3 심의방식 및 기준

□ 심의방식

- (예비심사) 각 지자체의 자율 심사 및 선정
- (최종심사) 문체부의 서류심사 → 발표심사 → 최종 선정
 - 서류심사: 신청 조건 충족 여부 등 제출 서류 바탕으로 심의
 - 발표심사: 장르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 심의

□ 심의기준

① 단체의 우수성 - 단체 구성원들이 순수예술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을 풍부하게 갖추었는지? -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예술단체로서의 높은 예술성을 갖추었는지? - 행정·경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단체 운영이 가능한 수준을 갖추었는지?
② 공연 창·제작 계획의 예술성 및 구체성 - 창·제작하는 공연이 높은 예술성을 갖추었는지? - 연습 및 상연, 참여인력 구성 등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지?
③ 관객 개발 및 홍보 노력 - 지역 관객 개발 및 지역기관·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노력하는지? - 지역의 공연관광 자원화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?
④ 예산 계획의 타당성 - 예산 책정이 적절한 수준인지? -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?

4 공모신청 안내

□ 공모신청 방법

- (신청기간) '24.9.30.(월) ~ 11.29.(금) 17:59
 - *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, **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**(신청서 작성,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)
 - *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·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
 - *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, 2~3일 전 접수 권장
 - *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, 장애신고 등은 '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이용'
- (신청방법)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
- (신청서류) 지원신청서, 협약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예술단체 증빙서류 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)

□ 문의

- (이메일) hwi331@korea.kr, (전화) 044-203-2721 또는 044-203-2745